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

제출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중

## 1. 제정이유

「경찰공무원법」이 경찰청 단독 소관에서 해양경찰청과 경찰청의 공동 소관으로 변경(2018. 5. 25.)되고 「해양경찰법」이 제정·시행('20.2.21)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대통령령 제 27941호, 2020. 12. 29. 공포·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위임 사항을 해양경찰청의 인사운영 환경에 맞추어 규정하고,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으로 복잡하게 분산되어 있던 규정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통합함으로써 법령의 이해와 집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 및 승진의 경우 임명장, 임용장을 수여하도록 함(안 제4조)
- 나. 임용권자는 징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인사발령 통지서를 주도록 함(안 제5조)
- 다.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징계사유, 직권면직사유, 소속 상사 소견 등을 고려하여 적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안 제10조)
- 라.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경과를 부여하고, 경과별 직무의 종류를 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 1) 해양경과는 홍보·기획·국제협력·감사·운영지원·경비·해상 안전·수색구조·수상레저·정보·장비기술·해양오염방제나 그 밖에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 3)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 4)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 5) 특임경과는 특공대·구조대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마.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 임용된 사람은 5년 이내에 채용 조건 또는 승진임용 조건에서 정한 것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함(안 제33조)

바.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 기준, 경력 평정은 12월 31일(다만, 총경·경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실시하도록 함(안 제38조)

사.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 가점 신설 (안 제49조)

아. 승진심사는 승진심사계획서, 승진대상자 명부, 근무성적 평정표, 승진심사표 등을 기초로 하여 실시하도록 함(안 제57조)

자. 특별승진의 대상이 되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포상 규정 신설 (안 제71조)

차.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 우대를 위한 대우공무원 선발 근무기간 1년 단축 (안 제74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8. 11. 15. ~ 12. 2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임용과 발령

제2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해양경찰청 소속의 경찰공무원(이하 "경찰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경찰공무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원본으로 갖추어야 한다. 다만, 원본서류로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원본과의 대조확인을 거친 사본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임용 및 임용제청 서식) ① 임용권자[「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용권의 재위

임을 받은 자를 포함하고, 「경찰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추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이 필요한 임용의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경찰공무원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경감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임용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경정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다.

제4조(임명장 또는 임용장) ① 임용권자는 신규채용되거나 승진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한다.

②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보되는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용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명장 또는 제2항에 따른 임용장은 소속기관의 장이 대리 수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인사발령 통지서) ① 임용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 외의 모든 임용과 승급 그 밖에 각종 인사발령을 하는 때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발령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은 회보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인사발령 통지서에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 사유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을 인사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발령대장) ① 임용권자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사항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발령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승급발령을 한 경우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발령대장은 필요한 경우 계급별 또는 발령내용별로 구분하여 비치·보관할 수 있다.

제7조(인사사무의 전산관리서식등) 인사사무를 전산관리하는데 필요한 서식 및 사무절차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증명서등의 발급) ① 해양경찰청,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교육원, 해양경찰정비창, 지방해양경찰청,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서 그 밖에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해양경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재직 중인 경찰공무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발령대장 또는 제13조에 따른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퇴직 해양

경찰기관 외의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11조에 따른 전력 조회를 거쳐 최종 퇴직 해양경찰기관 외의 재직경력에 대하여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의 서식은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8조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서식에 따른다.

제9조(정규임용심사위원회) ①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된다. 다만, 가장 계급이 높은 경찰공무원이 둘 이상인 경우 그 중 해당 계급에 승진임용된 날이 가장 빠른 경찰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은 소속 경감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회가 설치된 해양경찰기관의 장이 임명하되, 심사대상자보다 상위의 계급자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정규임용심사) ①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임용 적합 여부를 심사

하여야 한다.

1. 시보임용 기간 중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태도
2. 영 제20조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3. 영 제94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해당 여부
4. 소속 상사의 소견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시보임용경찰공무원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시보임용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의 면직 또는 면직제청에 따른 동의를 절차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파면 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 제3장 인사기록

제11조(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 및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해양경찰기관의 장(이하 "인사기록관리자"라 한다)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인사기록의 전자적 관리 등)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3조제1항의 인사기록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7조의3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하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작성·유지·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의 경찰공무원 인사기록 카드는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의한 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작성·유지·관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사기록을 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3조(인사기록의 종류) ① 인사기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카드
2. 복무선서
3. 공무원연금카드(부분)
4. 공무원건강카드
5. 신원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최종학교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8. 면허증이나 그 밖의 자격증명서
9. 경력증명서
10. 전력조사통보서
11. 채용신체검사서
12. 재정보증서(「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인 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13. 그 밖에 인사기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의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기록의 작성) ① 인사기록의 최초 작성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신임교육 기간 중 또는 수료와 동시에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해양경찰교육원장
2. 해양경찰교육원의 신임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임용되는 경찰공무원과 신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임용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초임보직 기관의 장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퇴직한 경찰공무원을 재임용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인사기록관리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기록을 재작성할 수 있다.

1. 분실한 경우
2. 파손 또는 심한 오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정정부분이 많거나 기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착오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경우

제15조(인사기록의 보관 및 이관) ①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은 경찰공무원 초임보직 기관의 장이 보관한다.

② 경찰공무원의 승진·전출 등으로 인사기록관리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 전 인사기록관리자는 변경 후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인사기록카드를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제16조(인사기록의 정리 및 변경)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징계·포상 그 밖의 인사발령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경찰공무원은 성명·주소 등 인사기록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 인사기록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인사기록(표준인사관리시스템으로 작성·유지·관리되는 인사기록은 제외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7조(징계처분 등에 관한 기록의 말소) ① 인사기록관리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징계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

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강등 :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인사기록관리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서 직위해제처분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록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해당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 및 절차 등 처분기록 말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18조(인사기록카드의 열람) ①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사기록관리자

2. 인사업무담당자

3. 본인

4. 그 밖에 경찰공무원 인사자료의 보고 등을 위하여 인사기록카드를 열람할 필요가 있는 사람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기록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인사기록담당자의 입회하에 정해진 장소에서 열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 경찰공무원의 병적증명서 및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인사기록을 열람한 사람은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인사기록의 수정) ① 인사기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정할 수 없다.

1. 오·탈자 등 잘못 기재한 것이 분명한 경우

2.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인사기록관리자는 법원의 판결, 국가기관의 장  
이 발행한 문서나 그 밖에 증명서류를 통하여 수정 요구가 정당한지  
판단한 후 수정하여야 한다.

제20조(교육훈련성적의 통보)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경찰공무원 교  
육훈련규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  
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경찰교육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서식에 따라 인사기록관리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제4장 경과

제21조(경과별 직무의 종류) 경찰공무원의 경과별 직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경과는 홍보·기획·국제협력·감사·운영지원·경비·해상  
교통관제·해양안전·수색구조·수상레저·정보·장비기술·해  
양오염방제나 그 밖에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및 특임  
경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직무
2. 수사경과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
3. 항공경과는 경찰항공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4. 정보통신경과는 경찰정보통신의 운영·관리에 관한 직무

5. 특임경과는 특공대·구조대 또는 응급구조에 관한 직무

제22조(경과 부여)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게 채용구분과 직무에 따라 경과를 부여한다.

제23조(전과의 유형) ① 전과는 해양경과에서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로의 전과만 인정한다. 다만, 정원감축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수사경과, 항공경과, 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에서 해양경과로의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가 신설 또는 폐지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전과를 인정할 수 있다.

1. 경과가 신설되는 경우: 해양경과·수사경과·항공경과·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에서 신설되는 경과로의 전과

2. 경과가 폐지되는 경우: 폐지되는 경과에서 해양경과·수사경과·항공경과·정보통신경과 또는 특임경과로의 전과

제24조(전과의 대상자 및 제한) ①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1. 현재 경과보다 다른 경과에서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정원감축, 직제개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존 경과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사람

3.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4. 전과하려는 경과와 관련된 분야의 시험(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만

해당한다)에 합격하거나 교육을 이수한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과를 할 수 없다.

1. 현재 경과를 부여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채용된 경찰공무원으로서 채용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제5장 채용시험

제25조(응시자격등의 기준) 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계급환산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②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하는 경우 다른 경력과의 계급환산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 또는 석사학위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 이 경우 연구경력은 박사학위소지자는 5년 이내, 석사학위소지자는 2년 이내로 한다.
3. 대학부설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 영 제16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채용예정 분야와 관련된 특수직무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한다.

④ 영 제16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경우를 말한다.

제26조(신체검사 및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①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신체검사 평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르며, 특수부서에 근무할 사람 또는 업무내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및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의 체력검사 평가기준과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종합적성검사의 방법) 종합적성검사는 인성검사, 적성검사 및 정밀신원조회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28조(면접시험의 평가요소와 합격자결정) ① 면접시험은 25점 만점으로 하되, 제1호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10점까지 정수로 평가하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평가요소는 1점부터 5점까지 정수로 평가한다.

1.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및 전문지식

3. 품행 · 예의 · 봉사성 · 정직성 · 성실성 및 발전가능성

4. 무도(武道), 합정운용, 운전 그 밖에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 능력

② 면접시험의 합격자결정은 제1항 평가요소에 대하여 각 시험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자로 한다. 다만,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제1항제1호 및 제4호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1점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 시험실시권자는 제1항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참고자료를 수집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동점자의 합격결정) ①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중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합격결정을 할 때 필기 또는 실기시험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해당 필기 또는 실기시험의 합격자로 한다.

②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제2호 · 제3호 및 제4호의 순위에 따른다.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정한 취업보호대상자 또는 취업지원대상자

2. 필기시험 성적

3. 실기시험 성적

4. 면접시험 성적

5. 체력검사 성적

③ 제1항 및 제2항의 동점자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제30조(채용심사관의 자격 및 직무) ① 영 제3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지방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에 경감 이상의 채용 담당 경찰공무원 1명을 채용심사관으로 둘 수 있다.

② 채용심사관은 응시자의 제출서류, 신원조사 결과 등 시험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심사·평가하고, 그 결과를 채용담당 주무과장과 인사·정보·감찰담당 경찰공무원(경정 또는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의 검토를 받아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 의견서를 작성하여 면접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채용심사관은 신원조사 결과가 부실하거나 신원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중점조사항목을 정하여 해당 기관에 신원조사를 다시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응시서류의 제출 등) ① 경찰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4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
2. 지문대조표 1통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4.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한정한다) 1통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통(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만 제출한다)
6.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통

② 경찰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인 신원진술서 3통(경정 이상은 4통)
2. 지문대조표 1통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4. 자격증명서 1통(「경찰공무원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경력증명서 1통
6.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한정한다) 1통
7.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최종 졸업한 학교의 생활기록부 1통(해당 학교를 졸업한 자만 제출한다)

8. 개인신용정보에 관한 조회서 1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제출받은 시험실시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 병적증명서

④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실시권자는 제2항의 서류를 심사하여 응시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시행 7일 전에 시험일시·장소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응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채용후보자 등록)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후보자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본인에게 송부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채용후보자가 「경찰공무원법」 제7조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6장 보직관리

제33조(전보의 제한) 특정한 직무분야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신규채용 또는 승진임용된 자는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용조건 또는 승진임용조건과 다른 직무분야에 전보될 수 없다. 이 경우 신규채용에 따른 전보제한기간에 대해서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4조(시간선택제전환 근무) ① 영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은 해당 경찰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기간을 나누어 할 수 있다.

②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시간선택제전환 근무기간의 종료, 육아휴직 사유의 소멸 등으로 시간선택제전환 근무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명령서 또는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③ 영 제48조제3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 근무 시간은 1일 최소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35조(업무대행 경찰공무원) ① 영 제4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을 지정하거나 업무대행 기간의 만료, 육아휴직자의 복직 등으로 업무대행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업무대행 명령서 또는 업무대행해제 명령서를 주어야 한다.

② 업무대행 경찰공무원은 1명을 지정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여러

사람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하되 5명을 초과할 수 없다.

## 제7장 승진임용

제36조(승진임용 예정 인원 등) ① 해양경찰청장이 영 제52조에 따라 승진예정 인원 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계급별·경과별·승진구분별 및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분야별로 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예정 인원을 따로 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8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감 이하 계급으로 특별승진임용할 예정 인원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의 계산) ①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영 제58조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기준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다만, 특별승진의 경우에는 영 제64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위원회 의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연수와 합하여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算入)한다.

## 제8장 근무성적 등의 평정

제38조(근무성적 평정 등의 시기) ① 영 제55조에 따른 근무성적 평정과 영 제57조에 따른 경력 평정은 연 1회 실시한다.

② 근무성적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고, 경력 평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총경과 경정의 경력 평정은 10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39조(근무성적 평정표)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하고,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별지 제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에 따라 한다.

제40조(근무성적 평정자) ① 근무성적 평정자는 3명으로 하되, 제1차 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고, 제2차 평정자는 제1차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되며, 제3차 평정자는 제2차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근무성적 평정자를 3인으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차 근무성적 평정자 및 제2차 근무성적 평정자 또는 제2차 근무성적 평정자 및 제3차 근무성적 평정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평정자를 특정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근무성적 평정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① 근무성적의 총평정점은 5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총경인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영 제5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제2평정요소(이하 "제2평정요소"라 한다)에 대하여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각각 15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와 제3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③ 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영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1평정요소(이하 "제1평정요소"라 한다)와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고,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은 30점을 최고점으로 한다.
2. 제1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가 20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제2차평정자와 제3차평정자가 확인한다. 이 경우 평정기준은 별표 제16호서식의 부표 1부터 부표 5에 따른다.
3. 제2평정요소에 대해서는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가 각각 11점을 최고점으로 평정한 점수와 제3차평정자가 8점을 최고점으로 하여 평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제42조(적성·발전성 등의 평가) 총경이 평정대상자인 경우 제1차평정자와 제2차평정자는 평정대상자의 성격, 적성, 발전성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3조(근무성적 평정점의 분포비율) 영 제55조제3항에 따른 제2평정요소에 대한 수·우·양·가의 구분은 다음 표의 평정점에 따라 정한다.

등급 \ 계급	총경	경정 이하
수	47점 이상	29점 이상
우	40점 이상 47점 미만	26점 이상 29점 미만
양	25점 이상 40점 미만	20점 이상 26점 미만
가	25점 미만	20점 미만

제44조(근무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①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제1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경정 이하 경찰공무원에 한한다)
2. 제2평정요소에 대한 평정점의 분포비율에 따른 등급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평정 대상 경찰공무원은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2차평정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제2차평정자는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제1항제1호의 근무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제45조(경력 평정 대상 기간의 계산) ① 경력 평정 대상 기간 중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휴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을 제외한 휴직기간·정직기간 또는 직위해제기간은 평정에서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기간은 해당 계급의 경력 평정 대상 기간에 산입한다.

1. 영 제5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에 산입되는 휴직기간

2. 영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위해제기간
3.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의 계급 또는 그 이하의 계급에 재임용되는 경우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력 평정 기준일 전 10년 이내의 기간 중 재임용된 계급 이상으로 근무하였던 기간
4. 시보임용기간
5. 영 제5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연수에 산입되는 기간

③ 경력 평정 대상 기간은 경력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하고 15일 미만은 경력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6조(경력의 평정자와 확인자) 경력 평정을 하는 경우 평정자는 평정 대상자가 속한 해양경찰기관의 인사담당 경찰공무원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가 된다.

제47조(경력 평정에 대한 재평정) 경력 평정을 한 후에 평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다시 평정하여야 한다.

제48조(경력 평정의 방법) ① 경력 평정의 총평정점은 35점을 만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 평정점을 합산한다.

1. 영 제57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본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2점으로 하여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 영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초과경력 평정점은 최고점을 3점으로 하여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 ② 경력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평정표에 적는다.

제49조(가점 평정) ① 영 제58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점을 준다.

1. 경찰공무원이 국어능력이나 외국어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8에 규정된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2. 경찰공무원이 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9에 규정된 점수를 더하여 평정한다. 다만, 별표 9에 규정된 자격증을 두 가지 이상 소지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하여 평정한다.
3. 경찰공무원이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표 10에 규정된 점수를 가점으로 평정한다.
4. 하위 계급에서 가점으로 평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가점으로 평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기간에 취득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승진임용 예정 계급의 가점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여할 수 있는 가점의 최대치는 2점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점: 0.5점
2.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점: 1점
3.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점: 0.5점

③ 제1항에 따른 가점 평정 결과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평정표에 적는다.

제50조(근무성적 평정표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

원에 대한 별지 15호서식의 및 별지 16호서식의 근무성적 평정표와 별지 17호서식의 경력·가점 평정표를 평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연구센터를 포함한다)·지방해양경찰청(해양경찰서를 포함한다) 및 해양경찰정비창 소속 경감 이상 경찰공무원,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청장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해양경찰교육원장
3. 해양경찰서 소속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지방해양경찰청장

제51조(경력 평정 결과 공개) 해양경찰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평정 대상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경력 평정 결과를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제9장 승진대상자 명부

제52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58조제1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대상자 명부에 적는 총평정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가점 평정을 한 경우에는 3점의 범위 안에서 그 가점을 합산한 점수를 총평정점으로 한다.

③ 영 제58조제2항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명부 작성기준일부터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1호의 방

식으로 산정한다. 다만, 경장 및 순경의 근무성적 평정점은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을 대상으로 하여 제2호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1.  $[(\text{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times 50/100) + (\text{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times 30/100) + (\text{최근 2년 전 3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times 20/100)] \times 1.3$

2.  $[(\text{최근 1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times 60/100) + (\text{최근 1년 전 2년 이내에 평정한 평정점} \times 40/100)] \times 1.3$

④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할 때에 평정 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해의 평정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정점 중 높은 점수로 한다.

1.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 다만, 전년도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평정점으로 본다.

2. 평정점이 없는 해의 전년도 평정점과 평정점이 없는 해의 다음 연도 평정점의 평균. 다만,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이 없는 경우에는 37.5점을 전년도 또는 다음 연도의 평정점으로 보아 평균을 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라 근무성적 평정점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한 경찰공무원이 퇴직 당시 계급으로 재임용되어 평정단위연도 중 평정점이 없는 연도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평정대상기간에도 불구하고 퇴직 당시 계급에서 평정한 평정점 중 최근에 평정한 평정점 순으로 그 평정단위

연도의 평정점으로 한다.

⑥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란 외의 공간에 그 사유와 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1. 영 제53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2. 영 제70조에 따른 심사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3. 영 제84조에 따른 시험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제53조(동점자의 순위) 승진대상자 명부의 점수가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제54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 영 제59조에 따른 승진대상자 명부의 조정은 승진심사 착수일 전까지 조정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만 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전·출입자가 있는 경우 전출기관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전출자를 삭제하고 그 전출자의 평정 관계 서류를 전입기관에 이관하며, 전입기관은 이관받은 평정 관계 서류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의 해당 순위에 전입자를 적는다.

2. 영 제5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승진대상자 명부의 란 외의 공간에 제한사유와 제한사유 발생 연월일을 붉은 글씨로 적는다.
3. 제47조에 따라 경력을 재평정한 경우에는 정정 도장을 찍고 란 외의 공간에 정정사유를 적는다.
4. 퇴직자가 있는 경우에는 승진대상자 명부에서 삭제하고 란 외의 공간에 퇴직 연월일과 그 사유를 붉은 글씨로 적는다.

제55조(승진대상자 명부의 효력) 승진대상자 명부는 그 작성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54조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56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제출)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승진심사를 하게 되는 경우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대상자 명부를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작성기준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0장 승진심사

제57조(승진심사 자료) 승진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계획서
2. 승진대상자 명부

3. 개인별 인사기록
4. 근무성적 평정표
5. 승진심사표
6. 그 밖에 승진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58조(승진심사 장소) 승진심사는 비밀이 보장되는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그 장소에는 관계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진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64조제2항·제3항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본다.

제60조(승진심사위원 등의 준수사항 등) ① 영 제61조·제62조·제64조·제65조 및 이 규칙 제59조에 따라 임명·소집된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회의 시작과 동시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서약서를 회의를 소집한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진심사위원, 승진심의위원, 간사 및 서기는 승진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소 외의 장소에 출입하거나 외부와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간사는 승진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별표 11의 승진심사 수칙을 심사위원 또는 심의위원에게 배부하여 그 내용을 주지시켜야 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해당 승진심사위원회 및 승진심의위원회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승진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는 3단계로 구분하되, 제57조에 따른 심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각 단계별로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단계별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기준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단계별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전(前) 단계 승진심사에서 제외된 사람은 다음 단계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단계 심사에서는 제1단계 심사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배제한다.
2. 제2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제2단계 심사기준에 따라 근무성적 등을 수·우·양·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승진심사표에 적고, 위원별 평가 결과에 따른 개인별 성적을 집계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별지 제21호서식의 승진심사 종합평가서를 작성하여 심사승진임용 예정 인원의 2배수 내의 인원을 제3단계 심사에 회부한다.
3. 제3단계 심사에서는 승진심사위원 전원의 합의로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제62조(승진심의위원회의 승진심의 절차 및 방법) ①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는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심의위원회"로, "승진심사"는 "승진심의"로, "승진심사위원"은 "승진심의위원"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친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선발된 사람을 최종 심사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한다. 이 경우 중복 선발된 사람이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보다 적을 때에는 각 승진심의위원회에서 선발된 나머지 인원 중에서 제61조제2항제3호의 선발방법에 준하여 선발한다.

제63조(승진임용예정자 명부 등의 작성) ① 영 제70조제1항제1호의 승진심사 의결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영 제7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승진임용예정자로 선발되지 아니한 사람(이하 "탈락자"라 한다)의 명부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영 제70조제2항에 따른 동점자가 있는 경우 선순위자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3조를 준용한다.

제64조(승진심사 결과 보고) ① 승진심사위원회는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61조에 따른 승진심사 방법 및 기준

2.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통계표

②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영 제70조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 결과를 보고받았을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에 별지 제25호서식의 승진심사대상자 및 승진임용예정자 선발 통계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5조(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 등의 제출)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영 제7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심사승진후보자 명부 사본을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장 승진시험

제66조(승진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영 제78조,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른 승진시험의 과목과 과목별 배점비율은 별표 12과 같다.

제67조(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등) 영 제7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단서에 따른 실기시험의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8조(승진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 ① 영 제81조제3항 및 제82조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순위자를 합격자로 한다.

1.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2. 해당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3. 바로 아래 계급에서 장기근무한 사람

4.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선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해당 계급에서의 근무성적을 산정하는 경우 평정점이 없는 해의 근무성적 평정점 산정에 관하여는 제5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69조(시험위원명단의 비공개) 채용시험위원 또는 승진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제12장 특별승진

제70조(특수임무 수행 부서의 범위) 영 제86조제3항제6호에 따른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특공대, 항공단 및 해양경찰구조대로 한다.

제71조(특별승진심사 대상) 영 제8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부혁신 경진대회 대상, 국민안전발명챌린지 대회 대상
2.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제1호와 공적이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포상

제72조(특별승진심사 절차) ① 임용권자는 영 제91조에 따라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특별승진심사를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경찰공무원의 공적조서와 인사기록카드를 관할 승진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은 승진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적의 내용을 현지 확인하게 하거나 그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

출하게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심사에서는 찬·반 투표 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승진임용예정자로 결정한다.

③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특별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승진심사위원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영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통심사위원회에서 특별승진심사를 마쳤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승진심사 의결서

2.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예정자 및 특별승진심사 탈락자 명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승진심사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제73조(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 영 제9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의 특별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지방해양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정비창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1. 해양경찰청장이 특별승진을 공약한 사항에 관하여 공을 세운 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2. 해양경찰청장이 연례적으로 행하는 유공자의 특별승진임용의 경우

3.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별승진임용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

### 제13장 대우공무원

제74조(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① 영 제93조제1항에 따라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영 제53조제1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를 경과한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으로서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1. 총경·경정: 7년 이상
2. 경감 이하: 5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근무기간의 산정은 영 제53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이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라 근무기간을 산정하는 때에는 재임용된 계급 이상에 해당하는 퇴직 전의 재직기간은 현재 계급의 재직기간에 합하여 근무기간에 산입하되, 제75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 기준일(매월 1일을 말한다) 전 10년 이내의 재직기간으로 한정한다.

③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적극행정 우수경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을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75조(대우공무원의 선발 절차 및 시기) ① 임용권자는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하여 대우공무원으

로 발령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발령사항은 인사기록카드에 적어야 한다.

제76조(대우공무원수당의 지급) ①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지급한다.

② 대우공무원이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거나 휴직하여도 대우공무원수당은 계속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우공무원수당을 줄여 지급한다.

③ 대우공무원의 선발 또는 수당 지급에 중대한 착오가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이를 정정하여 대우공무원 발령을 하고 대우공무원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7조(대우공무원의 자격 상실) 대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일에 대우공무원의 자격은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상실된다.

1. 상위계급으로 승진임용되는 경우: 승진임용일
2. 강등되는 경우: 강등일

## 제14장 정년의 연장

제78조(정년연장 신청)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7호서식의 계급정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1. 경찰병원장 또는 국·공립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서
2. 정년연장에 관한 소속기관장의 소견서
3. 최근 근무성적평정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신청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1월부터 6월까지인 경우: 2월 말일까지
2.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7월부터 12월까지인 경우: 8월 말일까지

제79조(계급정년연한의 계산) 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급정년에는 시보임용중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0조(정년연장 심사시기) 정년연장 심사는 매년 3월 및 9월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1조(심사기준 및 방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정년을 연장할 수 없다.

1. 신체검사 결과 별표 4에 따른 신체검사 기준(신장·체중·흉위부문을 제외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혈압에 관하여는 의사의 소견을 참작하여 정한다.
2. 직무수행능력이 극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기억력 또는 판단력의 현저한 감퇴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

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최근에 평정한 근무성적평정점이 만점의 60퍼센트 미만인 사람

② 영 제95조제2항에 따른 정년연장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를 관계 서류로 심사하며, 그 결과를 가 또는 부로 평가한다.

③ 정년연장심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에 의하되,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본인, 그 직근 상급자 또는 인사담당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정년연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제82조(정년연장 발령 등) ① 정년연장권자는 정년연장이 결정된 때에는 정년연장 기간을 명시하여 발령하고, 그 발령사항을 관계기관 및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정년연장권자 또는 소속 해양경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사기록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정년연장 발령사항을 인사기록카드 1면 상단에 별표 12의 정년연장카드인을 붉은색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 제15장 보칙

제8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경찰청장은 별표 4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신체검사 기준표 중 문신의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① 해양수산부령 제323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② 해양수산부령 제324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인사기록 보관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신규채용된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기관의 장을 제15조제1항에 따른 초임보직 기관의 장으로 본다.

제4조(경력평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되는 경력 평정부부터 적용한다.

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임용관계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 또는 선발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또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임용구비서류**(제2조 관련)

순번	발령구분		구비서류	비고
1	신규채용		인사기록카드 1통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병적증명서 1통 최종학력증명서 1통 경력증명서 1통 채용신체검사서 1통 신원조사회보서 1통 민간인신원진술서 3통 (경정 이상은 4통) 사진(명함판 상반신 탈모 3매)	전체사유가 기재된 것  국·공립종합병원장 발행
2	승진	일반승진	인사기록카드 사본 1통 일반승진시험합격통지서 1통	
		기타승진	승진순위표 1통	
3	면직	의원면직	사직원서(자필) 1통	
		직권면직	징계위원회동의서·전말서·직권면직 사유설명서 또는 직권면직사유를 증명할 서류 1통	
		당연퇴직	판결문 사본 1통	
		정년퇴직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1통	
4	징계		징계의결서 사본 1통	
5	추서		공적조사서 1통 사망진단서 1통 사망경위서 1통	
6	휴직 및 복직		진단서 또는 판결문 사본·현역증서 사본·입영통지서 사본 또는 휴직사유를 증명할만한 서류 1통	국·공립병원장, 보건소장 및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요양기관
7	직위해제		직위해제사유서 1통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경력경쟁채용 응시자격증 구분표** (제25조제1항 관련)

경 과	경정 이상	경감·경위	경사 이하
해 양	1급항해사, 1급운항사	2급항해사, 2급운항사, 3급항해사, 3급운항사	4급항해사, 4급운항사, 5급항해사
	1급기관사	2급기관사, 3급기관사	4급기관사, 5급기관사
	조선기술사	조선기사	조선산업기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관세사, 변호사	
			유도·검도·태권도 2단 이상(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에 한정한다), 합기도 2단 이상(법인으로서 중앙본부가 있으며, 8개 이상의 광역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각 지부에 10개 이상의 도장을 갖추고 있으면서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에 한정한다)
		자동차정비기사	제1종 대형운전면허, 제1종 보통운전면허, 자동차정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설비기사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이상
			조리기능사 이상
		화공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 이상, 위험물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 이상(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 해양환경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환경기능사 이상(관련 분야 경력 2년 이상)	

항공	운송용조종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사업용조종사(비행기 또는 회전익항공기)	
	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경력 10년 이상)	항공정비사(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경력 6년 이상)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정보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통신설비기능장, 전자기기기능장, 무선설비기사, 정보통신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전자기사, 전자계산기기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전자계산기체어산업기사, 무선설비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전자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전자계산기기기능사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보안산업기사
특 임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잠수기능장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잠수산업기사, 잠수기능사, 수상구조사
			응급구조사 1급

[별표 3]

**계급환산기준표**(제25조제2항 관련)

구분 계급	국 가 · 지 방일반직 또 는 별 정 직 공 무 원	기능직 · 고용직	군인	교육공무원			정 부 관 리 업 체	관련직무 분야학위 소지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전문대학 교원	대학교원		
경정	5급		소 령	18~23 호봉	13~18 호봉	11~16 호봉	과장 차장	박사학위 소지자
경감	6급 (3년이상)	기능직 5등급	대 위	14~17 호봉	11~12 호봉	9~10 호봉	계장, 대리(3 년이상)	
경위	6급	기능직 6등급	중 위 (항공요원 은 준위)	11~13 호봉	9~12 호봉	7~8 호봉	계장, 대리	
경사	7급	기능직 7등급	준 위 (중사)	9~10 호봉	8호봉 이하	6호봉 이하	평사원(3 년이상)	
경장	8급	기능직 8등급	중 사 (특경인 의무경 찰순경)	4~8 호봉			평사원	
순경	9급	기능직 10등급	하사, 병	3호봉 이하			평사원	

비고

1. 위 표의 기준은 위 표에 해당하는 경력 또는 그 이상의 경력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에 의한 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만 적용한다.
2. 4급 일반직국가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등을 하는 경우에는 총경으로 환산하되, 특수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한다.
3. 군인란 중 괄호 안에 표시된 계급은 의무경찰 및 항공요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교육공무원 중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따른 호봉을, 전문대학교원 및 대학교원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규정에 의한 호봉을 말한다.

[별표 4]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제26조제1항 관련)

구 분	내 용 및 기 준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 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 신 (色 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각이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 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 [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문 신	시술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해양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비고

“체격” 항목 중 “사지의 완전성” 및 “문신”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제26조제2항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 자	100미터 달리기 (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8 이상	57~54	53~50	49~46	45~42	41~38	37~33	32~28	27~23	22 이하
	50미터 수영 (초)	130초 이내									
여 자	100미터 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60초)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0 이상	49~46	45~42	41~38	37~34	33~30	29~26	25~22	21~19	18 이하
	50미터 수영 (초)	150초 이내									

비고

1.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및 팔굽혀펴기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50미터 수영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 수치를 기준으로 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내 인 경우 해당 종목을 합격한 것으로 보며, 체력검사 점수에는 반영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준 시간 이내에 완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체력검사에 불합격으로 한다.
4.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별표 6]

**기본경력 평정점수표** (제48조제1항제1호 관련)

1. 총경·경정·경감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2년	3년	4년
점수(월 0.667점)	8.004점	16.008점	24.012점	32점

2. 경위·경사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2년	3년
점수(월 0.889점)	10.668점	21.336점	32점

3. 경장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2년
점수(월 1.333점)	15.996점	32점

4. 순경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1년 6개월
점수(월 1.778점)	21.336점	32점

[별표 7]

**초과경력 평정점수표** (제48조제1항제2호 관련)

1. 총경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2년	3년
점수(월 0.084점)	1.008점	2.016점	3점

2. 경정·경감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점수(월 0.05점)	0.6점	1.2점	1.8점	2.4점	3점

3. 경위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2년	3년	4년
점수(월 0.063점)	0.756점	1.512점	2.268점	3점

4. 경사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1년 6개월
점수(월 0.167점)	2.004점	3점

5. 경장

경력 평정 대상 기간	1년
점수(월 0.250점)	3점

6. 순경

경력 평정 대상 기간	6개월
점수(월 0.500점)	3점

[별표 8]

**언어능력 가점** (제49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국어능력(0.3)			외국어능력(0.5)		
	1급	2급	3급	토익 870점 이상	토익 790점 이상	토익 730점 이상
평정점	0.3	0.2	0.1	0.5	0.3	0.2

비고

1. 국어능력 및 영어 등 외국어능력 가점은 합산하여 0.5점을 초과할 수 없고,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매년 가점평점일 기준으로 유효한 것이어야 한다.
2. 국어능력의 평정점은 「국어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국어능력 검정시험에서 취득한 자격등급에 따라 위 표를 적용한다. 다만, 시행기관이나 검정방법이 각각 다른 경우에는 해양경찰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토익 외의 영어능력평가시험이나 일본어, 중국어 및 러시아어 등 외국어능력평가 시험에 대한 평정점은 해양경찰청장이 위 표의 토익취득점수에 대하여 부여하는 평정점을 기준으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9]

**자격증 등 가점**(제49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점)

구분		평정점	
자격증 (0.5)	기계·전기·해양·안전관리·통신·전자·환경·항공·조선·화공·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사·기능장, 해기사 2급 이상,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운송용 조종사	0.5	
	해기사 3급, 비행기 또는 회전익 항공기 사업용 조종사	0.4	
	기계·전기·해양·안전관리·통신·전자·환경·항공·조선·화공·정보처리 분야의 기사, 해기사 4급, 응급구조사 1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 중 수영 또는 스킨스쿠버 종목에 한정하고, 수영 또는 스킨스쿠버 종목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영 또는 스킨스쿠버 종목에 선수 경력 또는 체육에 관한 행정·연구·지도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0.3	
	기계·전기·해양·안전관리·잠수·통신·전자·환경·항공·조선·화공·정보처리 분야의 산업기사, 해기사 5급, 응급구조사 2급,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잠수기능사, 수상구조사(「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수상구조사를 말한다), 인명구조요원(「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말한다),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같은 영 별표 2에 따른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종목 중 수영 또는 스킨스쿠버 종목에 한정한다), 계기비행증명	0.2	
	선박교통관제사(「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0.1	
전문 교육 (0.5)	학위취득	박 사	0.5
		석 사	0.3
		학 사	0.2

비고

1. 자격증 가점과 전문교육 가점은 각각 최대 0.5점까지 부여할 수 있고, 해당 계급(승진후보자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에서 취득한 것이어야 한다.
2. 임용 전 신입교육 중에 취득한 자격증은 임용계급에서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위 표에 규정한 자격증과 같거나 같은 수준이라고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은 위 표와 같은 수준으로 가점을 평정할 수 있다.
4.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은 해양경찰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된다.

[별표 10]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가산점(제49조제1항 관련)

구 분	수	우	양
평정점	0.5	0.3	0.2

[별표 11]

**승진심사수칙**(제60조제3항 관련)

1. 심사는 비공개로 한다.
2. 해양경찰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심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능력 있고 발전성 있는 인재를 발탁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4. 심사를 할 때 편견에 치우치거나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한다.
5. 심사가 시작된 후 심사가 끝날 때까지 심사장 외의 장소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6. 심사 관계자가 아닌 사람과 면회하거나 외부와 연락해서는 안 된다.
7. 심사 중 특정대상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편견에 치우친 발언을 하여서는 안 된다.
8. 토의된 내용을 누구에게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9. 심사자료를 통하여 알게 된 개인의 신분에 관계되는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10. 심사 서류를 복사하거나 심사에 사용한 서류를 반출해서는 안 된다.

[별표 12]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과목표**(제66조 관련)

(단위: %)

계급별	해양, 수사, 정보통신, 특임경과		항공경과	
	시험 과목		시험 과목	배점비율
경정	제1차 시험	· 행정법	· 행정법	30
		· 국제법	· 국제법	30
	제2차 시험	· 행정학	· 행정학	40
경감	· 행정학		· 행정학	35
	· 해양법(해사법규 포함)		· 해양법(해사법규 포함)	35
	· 해양경찰 실무(Ⅱ, Ⅲ, Ⅳ)		· 항공법규	30
경위	· 형법		· 형법	35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35
	· 해양경찰실무(Ⅱ, Ⅲ, Ⅳ)		· 항공법규	30
	중 2과목			
경사	· 형법		· 형법	35
	· 해사법규		· 해사법규	35
	· 해양경찰실무(Ⅱ, Ⅲ, Ⅳ) 중		· 항공법규	30
	1과목			
경장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35
	· 해사법규		· 해사법규	35
	· 해양경찰실무(Ⅰ)		· 항공법규	30

비고

1. 해양경찰실무(Ⅰ)는 함정실무(항해사, 기관사 5급 수준), 파출소실무(「경찰관 직무집행법」, 「경범죄처벌법」, 「범죄수사 규칙」,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및 운영지원·감사·대변인실무로, 해양경찰실무(Ⅱ)는 관리운영으로, 해양경찰실무(Ⅲ)는 경비안전으로, 해양경찰실무(Ⅳ)는 정보수사로 한다.
2. 행정학은 기초이론, 정책론, 조직론 및 인사·재무·환류행정으로 한다.
3. 행정법은 행정법 총론 전체와 행정법 각론 중 경찰행정법 분야로 한다.
4. 해사법규는 「해사안전법」, 「수상레저안전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양환경관리법」 등 해상에서의 항행안전이나 질서유지 및 해양오염 방제(防除)에 관한 법률로서 승진시험을 위한 공고 시에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법률로 한다.
5. 항공법규의 범위는 「항공법」(「항공법 시행령」 및 「항공법 시행규칙」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표 13]

**정년연장카드인**(제82조제3항 관련)

( )정년 연장

년 월 일까지 근무하게

된 사람임

5cm

1.5cm

## 경 찰 공 무 원 임 용 서

생산등록 번호					
등록일					
결재일					
공개구분					

협조자	
-----	--

제 목					
번호	계급	성명	임용 또는 제청(추천)사항	현 부서(직위)	임용일
1					
2					
3					
4					
5					
6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 임용조사서

임 용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임 용 조 건			
임용구분	채 용	<input type="checkbox"/> 공개경쟁채용시험	<input type="checkbox"/>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승 진	<input type="checkbox"/> 시험승진	<input type="checkbox"/> 심사승진	<input type="checkbox"/> 특별승진
	경 과 구 분			
자 격	학 력			
	경 력			
	자 격			
구 비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해양경찰청장 확인사항 (해양경찰청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승진임용의 경우에만 해당)</li> <li>2. 학력증명서</li> <li>3. 신원증명서</li> <li>4. 경력증명서</li> <li>5. 채용신체검사서</li> <li>6. 신원조사회보서</li> <li>7. 승진임용후보자 명부(승진임용의 경우에만 해당)</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li> <li>2. 병적증명서</li> </ol>		
<p>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위의 해양경찰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 임명장

(소속)

(계급성명)

(임명사항)

년 월 일

(임용권자)



# 임 용 장

(소 속)

(계급 성 명)

(임용사항)

년 월 일

(임용권자)

54121-01611일

240mm×340mm

97.1.8 승인

(보존용지(1종)120g/m<sup>2</sup>)

## 인사발령 통지서

( 계 급 )	( 성 명 )
( 발 령 사 항 )	
년 월 일	
( 임 용 권 자 )	

위와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통 지 자 )

54121-01811일

210mm×297mm

97.1.8 승인

(보존용지(1종)120g/m<sup>2</sup>)

( 행정 기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인사발령 통지

다음과 같이 발령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발령사항)

( 발 신 명 의 )

인

기안자(직위/계급) 서명 검토자(직위/계급) 서명 결재권자(직위/계급) 서명

협조자(직위/계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

## 발령 대 장

발령일자	소 속	경 과	계 급	성 명	발령사항	기록자	비고

54121-02011일

297mm×210mm

97.1.8 승인

(보존용지(2종)70g/m<sup>2</sup>)

## 경찰공무원인사기록철

경 과 ※ \_\_\_\_\_

계 급 ※ \_\_\_\_\_

성 명 \_\_\_\_\_

54121-02411일

97.1.8 승인

594mm×420mm

(보존용지(1종)120g/m<sup>2</sup>)

(내면좌측)

목차		
순서	기 록 명	확인
1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2	복무선서	
3	공무원연금기여금 납부확인증	
4	공무원건강카드	
5	신원증명서	
6	신원조사회보서	
7	최종학교졸업증명서	
8	면허 또는 자격증명서	
9	경력증명서	
10	전력조사통보서	
11		
비고		

(내면우측)

	※ 경 과	※ 관리번호
	※ 계 급	
		※ 소 속
	성 명	

※관리번호		경찰공무원인사기록카드										퇴직	일자	
①주민등록번호												구분	사유	
②성명	※⑦주소	※⑧생활근거지					※⑨호주와의관계					사진 30mm×40mm		
		③생년월일	동산	부동산	재산총액	가옥	생활정도							
※④계급	※⑩재산	차가□ 차가□	종류	월수입	상중하									
※⑤경과	⑪정당사 회단체	단체명		직책		가입연월일								
※⑥소속	⑫병역	체격등위	역종	군별	병과	입대연월일	제대연월일	계급 (제대당시)						
⑬ 임용 사항	계급 구분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 정감	치안 총감	⑭취미·특기	
	임용일자												취 미	
	임용과정												특 기	
⑮ 가족 사항	관계	성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비고	⑰ 신장 상태	키	몸무게	시력	혈액형	건 강 상 태	외모 (특징)	
								cm	kg	좌 우				
							⑱ 학력	기간	학교명	수업연한	전공및학위			
⑯ 자격 면허	연월일	종별		수여기간		⑲ 외국 시찰	기간	계급	국명(지명)	목적	시행기간			

54121-02311일

287mm×888mm

97.1.8 승인

(보존용지(1종)120g/m<sup>2</sup>)

연월일	계급	종류	공적개요	호수	수여기관		연월일	계급	종류	사유		발령기관	
						②① 징계 · 형벌							
②① 상훈						②② 교육 훈련	기간	계급	종류	성적		실시기관	
							평균점수	순위					
							~			/	/		
							~			/	/		
							~			/	/		
							~			/	/		
							~			/	/		
							~			/	/		
							~			/	/		
							~			/	/		







(성명 : ) 28승 급 기 록																
호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발령연월일																
기록자인																
호봉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발령연월일																
기록자인																

호봉획정근거

경력					전력조회					비고
경력연수	직위또는 직종	근무 기관	증명발급기관	문 서 번 호 및 일 자	추가경력	제외경력	총경력	기관명	문서번호 및일자	
~ ... ..... (년 월 일)	최초 : 최종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최초 : 최종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 ... ..... (년 월 일)	최초 : 최종 :			( . .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사정연월일		사정경력연수		사정호봉		잔여기간		인사담당관		
1차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		
2차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		
3차 :		년 월 일		호봉		월 일		직 성명 ㉠		



㉓보 증 란			
주 의 사 항	<p>1. 본표의 기록은 확실·정확하여야 하며 사실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p> <p>2. ※는 연필로 기입한다.</p>	확 인	<p>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계급 성명 ㉓인</p> <hr/> <p>본표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장 ㉓인</p>

(뒷면)



## 종합 의견서

수험번호		성명	
------	--	----	--

채용심사관 의견

종합 검토의견

참고 사항

○○○○○ 채용심사관

인

※ 등 록 번 호			<b>채용후보자등록원서</b>			④ 응시횟수		제 회		
제 회 번						응시번호		번		
						응시계급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성별	※입교통지연월일	※등록유효기간	※등록정리					
(한글)  (한자)	19 . . .  (만 세)	남 <input type="checkbox"/>	1.	20 . . .	심사	대조	등재			
		여 <input type="checkbox"/>	2.	※임명연월일	※연 장 기 간					
			20 . . . ~ 20 . . .	20 . . . ~ 20 . . .	(인)	(인)	(인)			
⑤ 현주소										
⑥ 병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사진)			
	미필사유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								
⑦ 학 력										
부터		까지		학교		전공·부분·과목				
⑧ 자 격 · 면 허					⑨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⑩ 특 기		⑪ 취 미			⑫ 운 동		⑬ 종 교			



## 채용후보자명부

등록 번호	성명	현주소	최종 학교명	병역관계		입교 여부	임명 연월일	임용 부서
				군별	전역 구분			

54121-02611일

210mm×297mm

97.1.8 승인

(보존용지(2종)70g/m<sup>2</sup>)









2. 성격(평정대상자의 특징적인 것 4가지 이상 선택 ○표시) 3. 적성

6. 물욕관계(청렴도)

요 소 별		1차평정	2차평정
①지도력	민주형		
	자유방임형		
	군림권위형		
②근면성실			
③안일무사			
④술선수범			
⑤무책임			
⑥인화단결			
⑦파별조성			
⑧협조·타협적			
⑨이기·독선적			
⑩검손·공손			
⑪편견·아집			
⑫순응적			
⑬반발적			
⑭자제적			
⑮감정적			
⑯적극적			
⑰소극적			

구분 요소별	1차평정			2차평정		
	적합	보통	부적합	적합	보통	부적합
⑲지휘관						
⑳참모						
㉑기획요원						

4. 발전성

요 소 별	1차평정	2차평정
㉒상위직 업무수행 능력이 우수하다.		
㉓상위직 업무수행 능력이 보통이다.		
㉔상위직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		

5. 세 평

㉕아주 좋다		
㉖보통이다		
㉗나쁘다		

㉘문제될 것 없다.		
㉙함부로 물품을 받는 버릇이 있다.		
㉚대내외인에게 물품을 요구하는 버릇이 있다.		

7. 음주관계

㉛전혀 마시지 않는다.		
㉜분별하여 마신다.		
㉝마시면 이성을 잃는다.		

8. 이성관계

㉞문제될 것 없다.		
㉟항상 문제가 된다.		

9. 가정관계

㊱원만(건전)하다.		
㊲보통이다.		
㊳불건전하다.		

10. 건강상태

㊴건전하다.		
㊵보통이다.		
㊶허약하다.		
㊷질병중이다.		

364mm×257mm

(일반용지 60g/m<sup>2</sup>)

## 근무성적 평정표(경정 이하)

○평정대상자

소 속:  
계 급:  
성 명:

○평정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제 1 평 정 요 소							제 2 평 정 요 소					총 계	단 계 별 평 정 자	
평정 항목	경찰업무발전에의 기여도	포 상	직장훈련	견문제출	근무수행태도	계	평정 항목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계			
배 점	5	5	5	3	2	20	배 점	9.5	11	9.5	30	50	1차평정자	
내 용	경찰 기본 근무 실적을 평가하되, 부표 1에 따른다.	상별점수를 상계하되, 부표 2에 따른다.	체 력 검 정 및 능력개발 등을 평가하되, 부표 3에 따른다.	견문제출, 견문활용도에 따른 능력을 평가하되, 부표 4에 따른다.	근 태 사 항 을 평가하되, 부표 5에 따른다.	제1 평정 소 계	내 용	· 담당직무의 양 · 직무수행의 정확성 · 직무수행의 신속성	· 직무지식 및 기술 · 직무의 이해력 · 창의 및 기획력 · 관리 및 통솔력	· 성실 및 준법성 · 친절 및 협조성 · 적극 및 책임성	제2 평정 소 계	제1 평정 + 제2 평정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차평정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1차 평정							1차 평정	3.5	4	3.5			평점 (총 득점 ×50/100)	3차평정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차 평정 (확인)							2차 평정 (확인)	3.5	4	3.5				
3차 평정 (확인)							3차 평정 (확인)	2.5	3	2.5				
비 고														

※ 제1평정요소는 1차평정자가 평가, 2·3차평정자는 관련 자료에 따라 확인한다.  
비고란에는 항목별 평가자료의 내용을 간략히 기재한다.

○ 제2평정 분포비율

- 수(29점 이상) 20%
- 우(26점 이상 29점 미만) 40%
- 양(20점 이상 26점 미만) 30%
- 가(20점 미만) 10%

210mm×297mm(백상지 80g/㎡)

**제1평정요소 평정기준**(제41조제3항 관련)

**1. 경찰업무 발전에 대한 기여도 평가기준**

구 분	내 용	단위	배점
기본근무 점수 (12점)	· 27일 이상 근무	월	1.0
	· 24일 이상 26일 이하 근무	월	0.8
	· 23일 이하 근무	월	0.6
업무수행 점수 (3점)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 - 인명구조, 조난선박 등 구조 및 지원 업무 - 선박 안전관리, 각종 안점점검 등 예방활동	건	0.1
	· 범죄 예방, 각종 해양범죄 단속·수사 및 감찰조사 업무	건	0.5
	· 고소·고발·진정 등 각종 민원(사건) 접수·처리	건	0.1
	· 해상경비·경호 및 대테러 작전 수행 등 해상치안 관련업무	회	0.1
	· 해상치안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회	0.1
	· 해상교통과 해상교통 위해의 방지를 위한 업무	회	0.1
	·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회	0.1
	· 각종 연구·분석 및 장비·기술 등 개발업무	건	0.1
	· 각종 장비 운영, 정비업무 및 타 부서 업무 지원	회	0.1
	· 각종 계획 수립 및 보고서 기안·시행·결재	회	0.1
	·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수행으로 인정 한 업무	회	0.1

※ 비 고

- 적용기간: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적용기간 중에 승진을 한 경우에는 해당 계급 승진일부  
터 산정한다.
- 근무라 함은, 휴일·연가(휴가, 병가 등)·출장·파견 등을 포함한다. 다만, 직위해제·징계·휴직 등으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 위 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5점으로 하고, 이를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평정점으로 한다.
- 파견, 장기교육 대상자는 업무수행 점수를 3점으로 한다.
- 그 밖에 경찰업무에의 발전기여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2. 포상 등 평가기준

상		별	
훈격 구분	점수 가점	징계 · 경고 · 주의 구분	점수 감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훈장</li> <li>• 포장</li> <li>• 대통령 표창</li> <li>• 국무총리 표창</li> <li>• 해양경찰청장, 각 부처의 장관(장관급 공무원 및 처장을 포함한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표창</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강등</li> <li>• 정직 3월</li> <li>• 정직 2월</li> <li>• 정직 1월</li> <li>• 감봉 3월</li> <li>• 감봉 2월</li> <li>• 감봉 1월</li> <li>• 견책(영창 · 근신 포함)</li> </ul>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의 장, 통합방위본부장, 각 군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특별검사, 고등검찰청검사장 및 군사령관 표창</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경찰청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경찰교육원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경찰대학장 · 경찰인재개발원장 · 중앙경찰학교장 · 경찰병원장 · 지방경찰청장 · 지방검찰청검사장 · 군단장(교육사령관 포함)의 표창</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문경고</li> <li>• 직권경고</li> <li>• 주의</li> <li>- 해양경찰교육원장 · 지방해양경찰청장</li> </ul>	2 1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 해양경찰정비창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101단장 · 기동단장 · 사단장 · 경찰서장 표창</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문경고</li> <li>• 직권경고</li> <li>• 주의</li> <li>- 해양경찰연구센터장 · 해양경찰서장 · 해양경찰정비창장 ·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 함정장</li> </ul>	1 0.5 0.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검찰청지청장 · 여단장 표창</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문경고</li> </ul>	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함정장 · 연대장 표창</li> </ul>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권경고</li> <li>• 주의</li> </ul>	0.25 0.1

※ 비 고

1. 군의 표창은 통합방위작전, 해양경찰 행정발전 업무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공로로 받은 표창만 “상”으로 인정한다.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관장의 표창은 해양경찰업무와 관련된 공로로 받은 표창만 “상”으로 인정한다.
3. 상별은 현재 재직 중인 계급에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기간 중 받은 포상은 승진 임용예정계급의 "상"에 포함한다.
4. "상" 점수 합계에서 "별" 점수 합계를 뺀 점수를 2분의 1로 하되, 최고점수는 5점, 최하점수는 0점으로 한다.
5. 종전의 국민안전처장관,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해양경비안전교육원장, 해양경비안전서장,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장의 표창은 각각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의 표창으로 본다.

### 3. 직장훈련 평가기준

구분	배점	산 식	비고
체력검정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1회</li> <li>• 종목별 1등급 ~ 4등급(5점 ~ 2점)으로 구분</li> <li>• 종목별 합산점수/종목 수</li> </ul>	경정 이하만 해당하고, 체력검정의 평가종목 및 평가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능력개발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정 이하: <math>7 \times (\text{취득점수}/100)</math></li> </ul>	경정 이하만 해당하고, 집합교육 및 사이버교육 등 능력개발의 평가대상과 평가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 적용기간: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 평정점: 평가기준별로 평정대상자가 받은 점수를 합산하여 5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로 한다.

### 4. 견문제출 평가기준

구 분		배 점																			
평 가	기본점수 (2점)	<p>1. 평가방법(월별)</p> $\frac{1}{6} \times \frac{\text{실제제출건수}}{\text{기본제출건수}}$ <p>2. 월 기본제출건수</p> <p>가. 정보 외근근무자: 10건                      나. 수사·형사·보안·외사 외근근무자: 2건                      다. 그 외 근무자: 1건</p> <p>※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까지 평가한다. 다만, 월 0.167점을 초과하지 못한다.</p>																			
	능력점수 (1점)	<p>1. 능력점수 배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특보·판단</th> <th>중보</th> <th>통보</th> <th>기록·조사</th> </tr> </thead> <tbody> <tr> <td>정보 외근근무자</td> <td>0.083</td> <td>0.042</td> <td>0.021</td> <td>0.010</td> </tr> <tr> <td>수사·형사·보안·외사 외근근무자</td> <td>0.083</td> <td>0.083</td> <td>0.083</td> <td>0.042</td> </tr> <tr> <td>그 외 근무자</td> <td>0.083</td> <td>0.083</td> <td>0.083</td> <td>0.083</td> </tr> </tbody> </table> <p>2. 평가방법 = 실제 제출건수 X 배점                      ※ 월 0.083점을 초과하지 못한다.</p>	구 분	특보·판단	중보	통보	기록·조사	정보 외근근무자	0.083	0.042	0.021	0.010	수사·형사·보안·외사 외근근무자	0.083	0.083	0.083	0.042	그 외 근무자	0.083	0.083	0.083
구 분	특보·판단	중보	통보	기록·조사																	
정보 외근근무자	0.083	0.042	0.021	0.010																	
수사·형사·보안·외사 외근근무자	0.083	0.083	0.083	0.042																	
그 외 근무자	0.083	0.083	0.083	0.083																	

※ 비고

1. 적용기간: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 년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2. 최고점수는 3점으로 한다.
3. 타 기관 파견자 및 휴직자 등은 기본점수로 평가하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능력점수를 평가한다.

## 5. 근무수행태도평가기준

구 분	감 점 점 수
무 단 결 근 근무지시위반 경 위 서 소 집 불 응	1회당 0.1

※ 비 고

1. 근무수행태도평가에 의한 감점점수의 계산은 1년 단위로 한다.
2. 2점에서 감점점수를 뺀 점수를 평정점으로 하되, 최하점수를 0점으로 한다.

### 경력·가점 평정표

평정 대상자	소속		평정자	직위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확인자	직위	
	현 계급 임명 연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경력	구분	현 계급 재직기간	산입 또는 제외 기간	경력 평정기간	평정점
	기본경력				
	초과경력				
※ 산입 또는 제외 사유				계	

교육훈련	과정별	교육기간	이수여부

구분		종류	근무(이수)기간 또는 취득일	평정점
언어능력	국어 검정점수			
	외국어 검정점수			
자격증				
전문교육		학위 취득		
				계

※ 비고: 경력 평정 시 산입기간 또는 제외기간이 있는 사람은 해당란에 적용기간을 기재한다.

1. 산입기간: 사법연수원 연수기간, 5급공무원 5년 이상 근무경력 중 20퍼센트, 재임용전의 경찰경력
2. 제외기간: 휴직,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정직)



## 서 약 서

본인은 승진심사업무에 종사하면서 편견에 치우치거나 사사로운 마음을 갖지 않고 해양경찰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이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승진심사위원회 위원(간사·서기)

계급

성명

인

귀하





( )승진심사의결서

경찰공무원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승진임용 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한다.

( )승진임용예정자를 명으로 한다.

년 월 일

경찰관( 중앙 ) 승진심사위원회  
보통

- 위원장 계급 성명 인
- 위원 계급 성명 인
- 위원 계급 성명 인
- 위원 계급 성명 인
- 위원 계급 성명 인
- 위원 계급 성명 인
- 위원 계급 성명 인
- 간사 계급 성명 인







## 2. 경과별

구 분 \ 경과	계	해 양	수 사	항 공	정보통신	특 임	비 고
정 원							
현 원							
승진대상 인원							
심사대상 인원 (5배수)							
선발 인원							

## 3. 근속연수별

구 분	근속연수	계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4년 미만	4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7년 미만	7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비 고
			총 근속 기간	현 계급 근속기간								
심사대상 인원 (5배수)	총 근속 기간											
	현 계급 근속기간											
선발 인원	총 근속 기간											
	현 계급 근속기간											

## 4. 연령별

구 분 \ 연 령	계	24세 이상 25세 미만	25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35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45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55세 미만	55세 이상	비 고
심사대상 인원 (5배수)										
선발 인원										

## 5. 학력별

구 분 \ 학 력	계	대학원 졸업	대학 졸업	대학3 년수료	대학2 년수료	대학1 년수료	고교 졸업	고교 중퇴	중 학교 졸업	중 학교 중퇴	초 등 학 교 졸업	비 고
심사대상 인원 (5배수)												
선발 인원												

210mm×297mm[백상지 80g/㎡]





## 서 약 서

본인은 20 . . . 경찰공무원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정년 연장 발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연장기간 중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하여 복종하며, 친절하고 공정한 자세로 근무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성명 (인)

계급

귀하